

# 전시회 참가규정

## 제1조 용어의 정의

- “전시자”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
- “전시회”라 함은 2006 국제 교통·물류 박람회를 말한다.
- “주최자”라 함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.
- “대행사”라 함은 벡스코(BEXCO)를 말한다.

## 제2조 전시면적 할당

- 주최자와 대행사는 신청접수순,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면적 및 위치를 할당한다.
-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전시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와 대행사의 재량이며,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 제3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

신청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-1 무역센터 1905호 2006 국제 교통·물류 박람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 및 관리비 총액의 50%를 납입하여야 한다. 전시면적은 신청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면적을 할당 기준에 의거 배정하며, 잔금은 2006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4조 참가비 및 부스 설치비

참가비는 무료이며 조립식 부스 설치비는 ₩ 300,000(부과세 별도)이고 독립식부스 설치비는 참가사 자체에서 부담한다.

## 제5조 참가비 내역

참가비에는 전시장소, 24시간 외곽경비, 통로청소, 홍보, 전시회 디렉토리제공 등이 포함된다.

## 제6조 설치 및 철거

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와 대행사측이 규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대행사측에 보상하여야 한다.

## 제7조 주최자와 대행사측에 대한 정보 제공

전시자는 주최자와 대행사가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2006 국제 교통·물류 박람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와 대행사측에 제공하여야 한다.

## 제8조 전시실 관리

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, 주최자와 대행사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
## 제9조 보험, 보안 및 안전

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. 주최자와 대행사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최자와 대행사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.

## 제10조 현장판매

전시회의 참가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,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다. 단, 주최자와 대행사가 별도로 정한 특별 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## 제11조 위험부보

전시자는 전시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, 훼손 또는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에 대하여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최자와 대행사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 제12조 해약

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와 관리비를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 또는 대행사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## 제13조 전시회 변경

주최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시자는 주최자와 대행사에게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 제14조 보충규정

주최자와 대행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, 또한, BEXCO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제15조 분쟁의 해결
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, 대행사,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
**2006 국제 교통·물류 박람회**

International Transport & Logistics Fair 2006